

2000년저소득세입자전세자금보증채무동의안심사보고서

1. 심사경과

- 가. 제안일자 : 2000. 4. 20
- 나. 제출자 : 부천시장
- 다. 회부일자 : 2000. 4. 21
- 라. 상정 및 의결일자
 - 제78회 부천시의회(임시회) 제3차 건설교통위원회(2000. 4. 28) 상정 의결

2. 제안설명요지

(제안설명자 : 건축과장 민천식)

가. 제안이유

- 2000년 저소득세입자 전세자금 지원함에 있어 주택은행과 부천시의 협약내용으로 향후 지방자치단체가 융자금의 결손을 보전코자 할 경우를 대비, 지방의회의 사전의결로 보증채무를 동의코자 함(지방재정법시행령 제21조 규정)

나. 주요골자

- 2000. 저소득세입자 전세자금 용자에 따른 보증채무부담행위를 다음과 같이 동의함
 - 가) 자 금 명 : 저소득세입자 전세자금 융자금
 - 나) 지급 보증 금액 : 금회배정액 2,233백만원
 - 다) 지급보증대상자 : 전세융자금 용자대상자
 - 라) 용 자 금 지 급 : 한국주택은행(부천지점, 역곡지점, 원종지점, 삼곡지점, 고강지점, 소사지점, 부천남부지점, 춘의지점, 상동지점, 중동지점 등)
 - 마) 상 환 방 법 : 2년 이내 전액 일시 상환
 - 바) 이 율 : 연리 3%
 - 사) 지급 보증 기간 : 2년 간(단, 전세 재계약으로 인한 연장신청자 1회 연장가능)

3. 질의 및 답변요지

질 의	답 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99년도에 지원한 융자금 중 연체금액은? ○ 99년도의 결손처분액은 얼마인가? ○ 결손처분된 가구에 대한 대책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연체가구는 총 23가구에 금액은 8천만원임 ○ 5가구에 금액은 약 2천만원임 ○ 보증인에 대하여 재산을 압류해 놓은 상태임

○ 향후 연체 등을 감안할 때 용자기약 체결 시 보증인을 집주인으로 하는 것보다 주택금융신용 보증기금으로부터 보증서를 발급받아 용자를 신청토록 하는 것이 더욱 확실하다고 보는데?

○ 용자대상자를 보면 특정 동에 너무 많이 치우친 것 같은데 추후에는 홍보를 철저히 하여 여러 동에서 골고루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하기바람

○ 보증서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수수료를 지불해야 하는데 영세서민들인 관계로 수수료 지불에 불만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며, 또한 재산이 없을 경우는 보증서를 발급해주지 않고 있으나 되도록이면 보증서를 발급받아 신청토록 최대한 홍보하겠음

○ 동별로 안배가 되도록 홍보를 철저히 하겠음

4. 토론요지

가. 찬성토론

○ 없 음

나. 반대토론

○ 없 음

5. 심사결과

○ 원안의결

6. 소수의견요지

○ 없 음

7. 기타 필요한 사항

○ 없 음

2000.저소득세입자전세자금보증채무동의안

의안번호	제323호
의결년월일	2000. 5. 3 (제78회)

제출년월일 : 2000. 4. 20

제 출 자 : 부 천 시 장

1. 제안이유

○ 2000년 저소득세입자 전세자금을 지원함에 있어 주택은행과 부천시의 협약내용으로 향후 지방자치단체가 용자금의 결손을 보전코자 할 경우를 대비, 지방의회의 사전의결로 보증채무를 동의코자

함(지방재정법시행령 제21조 규정)

2. 주요골자

○ 2000. 저소득세입자 전세자금 융자에 따른 보증채무부담행위를 다음과 같이 동의함

가) 자 금 명 : 저소득세입자 전세자금 융자금

나) 지급 보증 금액 : 금회배정액 2,233백만원

다) 지급보증대상자 : 전세융자금 융자대상자

라) 융 자 금 지 급 : 한국주택은행(부천시점, 역곡지점, 원종지점, 심곡지점, 고강지점, 소사지점, 부천남부지점, 춘의지점, 상동지점, 중동지점 등)

마) 상 환 방 법 : 2년 이내 전액 일시상환

바) 이 율 : 연리 3%

사) 지급 보증 기간 : 2년 간(단, 전세 재계약으로 인한 연장신청자 1회 연장가능)

3. 제안본문

제목 : 2000. 저소득입자 전세자금 융자지원에 따른 보증채무 동의

가. 목적

○ 도시 영세 세입자의 주거안전을 위하여 저리의 전세자금을 융자지원 코자함

나. 지원방법

○ 융자대상 : 부천시에 1년 이상 거주하고 있는 전세입자 중 전세자금 2,000만원 이하인 전세입자

○ 융자지원 규모 및 가구당 지원액

- 금회 배정액 : 2,233백만원

- 가구당 지원액 : 1,000만원 이내

○ 대출금리 : 연리 3%(본인부담)

○ 상환조건

- 2년 이내 일시상환(전세 재계약시에는 1회에 한하여 연기가능)

- 자금관리 : 주택은행에서 특별계정 설치 관리

다. 융자실시 방법

○ 융자업무 취급기관 : 주택은행 부천시점 외 9개 점포

○ 융자계약 체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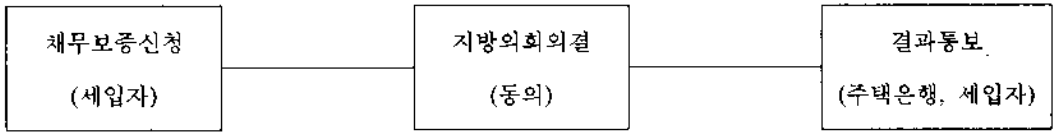
- 계약당사자 : 지원대상 세대주와 주택은행

- 보증인 : 재산세 납부실적이 있는 세대주 1인 또는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보증서를 발급받아 주택은행에 융자신청

- 채무이행에 대한 기관보증 :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총체적 보증

라. 채무이행 보증절차

○ 근거규정 : 지방재정법시행령 제21조



○ 채무보증 내용

- 전세자금 융자금 상환의 장기간 연체로 부득이 지방자치단체의 결손보존 문제가 발생될 경우로서
- 주택은행의 독촉장 발부 후 6개월 이상의 기간이 경과한 이후 회수가능여부를 관할 동사무소와 주택은행에서 채무관계자를 직접방문 확인한 후
- 회수가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부천시에서 손실액에 대한 결손을 보존토록 하고
- 부천에서는 채무자에 대하여 구상권 청구

마. 기타사항

- 가옥주는 전세기간이 만료되거나 중도에 계약을 해지할 경우에는 전세금액 중 융자금분을 관할 동장에게 반환하고, 동장은 주택은행에 즉시 상환하며
- 동장은 채무자에 대하여 분기회 이상 융자금 및 이자납입 상환실태, 주거실태 등을 정기적으로 파악 관리함

채무보증신청서

제 호

부천시장 귀하

주채무자[㉠]

다음 채무의 원리금 상환에 대하여 별항의 준수사항을 이행하겠아오니 이를 시장이 보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사업명 : 저소득세입자 전세자금 융자지원

2. 내 용

가. 채권자 : 주택은행장

나. 채무액 : 총 2,233백만원(가구당 1000만원 이내) 중 백만원

다. 이자율 : 연 3%

라. 상환기간 : 자 2000. 지 2002. .2년 간(1회에 한하여 연기 재계약)

마. 상환계획 : 2년 이내 일시상환

3. 사 유

가. 주채무 발생 : 전세자금 마련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소득세입자를 돕기 위함

나. 시보증이 필요한 사유 : 저소득세입자에게 전세자금 융자

다. 채무보증 신청의 근거 : 지방재정법시행령 제21조

4. 준수사항

가. 주채무자는 시의 보증을 받은 채무의 이행사항을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합니다.

나. 주채무자는 사업내용 또는 보증받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합니다.

다. 시장은 시에게 보증한 채무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라. 시장은 전항의 규정에 의한 조사의 결과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당해사업의 목적을 달성하게 하기 위하여 사업내용의 시정, 기타 필요한 조치를 주채무자에게 요구할 수 있으며 주채무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마. 주채무자는 타채무에 우선하여 시에서 보증한 채무를 상환하여야 한다.

채무보증동의통지서

귀하

부천시장

다음 채무의 원리금 상환에 대하여 시에서 보증함에 있어 지방재정법시행령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었음을 통지하오니 필요한 조치를 취하기 바랍니다.

- 1. 주 채 무 자 :
- 2. 채 무 건 명 : 저소득세입자 전세자금 융자금
- 3. 채 무 액 : 백만원
- 4. 이 자 율 : 연 3%
- 5. 상 환 기 간 : 자 2000. 지 2002. 2년 간(1회에 한하여 연기 재계약)
- 6. 상 환 재 원 : 신청자부담 - 원금, 상환이자 3%
- 7. 융 자 재 원 : 2,233백만원
- 8. 관 계 기 관 : 한국주택은행
- 9. 채무보증근거 : 지방재정법시행령 제21조

10. 준 수 사 항

- 가. 채권자와 주채무자는 시의 보증을 받은 채무의 이행상황을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합니다.
- 나. 채권자와 주채무자는 사업내용 또는 보증받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소속공무원, 채권자 기타 시장이 정하는 자를 주채무자의 사무소 또는 사업장에 파견하여 서류, 재산, 자금운용 및 사업운영상황 기타 필요한 사항을 조사하거나 관계자에게 질문하게 할 수 있으며 채권자 및 주채무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 다. 시장은 전호의 규정에 의한 조사결과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당해사업의 목적을 달성하게 하기 위하여 사업내용 시정, 기타 필요한 조치를 주채무자에게 요구할 수 있으며 주채무자는 이에 응하여야 합니다.
- 라. 채권자는 시에서 보증한 채무를 타에 우선하여 회수하여야 합니다.
- 마. 주채무자는 타채무에 우선하여 시에서 보증한 채무를 상환하여야 합니다.
- 바. 융자지급기간은 채무보증승인을 득하여 통보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융자금을 수령하여야 하며, 동기간 내 미수령시 차순위자에게 융자금이 지급됩니다.